Conditions of Purchase 구매 조건

1 주문 및 확인

1.1 발주자는 공급자가 주문 접수 후 2 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문에 대한 승낙(확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1.2 주문의 변경, 수정 또는 추가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일부가 된다. 특히, 발주자는 공급자의 일반 약관이 본 구매 약관에 부합하거나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급자의 일반 약관에 구속된다.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인수 및 결제는 그러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공급자가 제공한 기타 문서(예: 사양, 데이터 시트, 기술 문서, 광고 자료, 주문 확인서 및/또는 배송 문서)의 계약 조건, 책임, 사용 제한, 적용 제한 및/또는 적합성 제한에 관한 조항 또는 본 구매 조건의 조항을 변경하는 기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

2.1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독점적이고 양도 가능한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2.1.1 관련 문서를 포함한 제공 및 서비스를 사용하고, 다른 제품에 통합하여 배포;

2.1.2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이하 총칭하여 "소프트웨어"라 함)를 설치, 실행, 테스트 및 운영;

2.1.3 위 2.1.2 항에 따른 사용권을 지멘스 에너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공동 지배하는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이하 "계열사"라 함)가 계약된 제 3 자, 대리점 및 최종 고객에게 재라이선스;

2.1.4 계열사 및 대리점에 위 2.1.2 항에 따른 사용 권한을 최종 고객에게 재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한;

2.1.5 다른 제품과의 통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계열사, 계약된 제 3 자 또는 대리점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및 복사하도록 허용;

2.1.6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맥락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 판매, 대여, 임대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 및, 한 번에 사용하는 라이선스 수가 구매한 라이선스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는 권한;

2.1.7 위 2.1.6 항에 따른 사용 권한을 계열사와 계약한 제 3 자 및 대리점에 재라이선스

2.2 위의 2.1 항에 부여된 권리 외에도 발주자, 계열사 및 대리점은 최종 고객이 각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다.

2.3 발주자가 부여하는 모든 하위 라이선스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자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공급자는 적시에, 늦어도 주문 확인 시점까지 발주자에게 납품 및 서비스에 오픈 소스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의 맥락에서 "오픈 소스 구성요소"는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가 수정 및/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라이선스(예: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 GNU 약소 GPL(LGPL) 또는 MIT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공급자의 납품 및 서비스에 오픈 소스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공급자는 모든 해당 오픈 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는 주문이 확정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Siemens Energy is a trademark licensed by Siemens AG

- 사용된 모든 오픈 소스 구성 요소의 구조표로, 관련 라이선스 및 해당 버전을 표시하고 해당 라이선스의 전문 사본을 포함하며 저작권 및/또는 저작자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표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목차를 포함해야 한다.
- 해당 오픈 소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스크립트 및 생성 환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 코드

2.5 공급자는 적시에, 늦어도 주문 확인 시점까지 공급자가 사용하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발주자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피레프트 효과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카피레프트 효과"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 조항이 공급자의 특정 제품 및 해당 제품에서 파생된 모든 제품을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예를 들어 소스 코드가 공개된 경우에만)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자가 사용하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카피레프트 효과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발주자에게 어떠한 비용 및 책임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3 납품

3.1 납품 또는 이행의 적시성을 계산할 때 해당 시점은 발주자가 지정된 수령 장소에서 수령한 날이며, 설치 또는 시운전 및 서비스 제공의 적시성을 판단할 때 해당 시점은 인수 시점으로 한다.

3.2 납품 또는 이행 지연 또는 수정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결정을 구해야 한다. 납품 또는 이행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모든 적절한 조치(예: 교대 근무, 초과 근무, 필요한 모든 신속 운송)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 대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3 합의된 배송 또는 이행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추가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어떠한 비용 및 책임 결과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발주자는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3.4 공급자가 공급 또는 서비스의 납품 또는 이행을 이행하지 않고 공급자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연된 매 일자마다 관련 구매 주문 가격의 0.3%를 지연 손해로 지급하되, 총 지연 손해 금액은 관련 구매 주문 가격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5 발주자가 납품, 서비스 또는 이행을 인수할 때 다른 권리를 유보하지 않더라도 이는 위의 지연 손해, 손해 또는 보증 청구 또는 기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험의 이전, 이행장소, 소유권의 이전

4.1 공급품에 대한 위험은 제 3 조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한 목적지에서 공급품을 수령하는 시점에 발주자로 이전된다. 서비스에 대한 설치 또는 시운전을 수반하는 공급품의 위험은 공급품 및 서비스가 인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시점에 발주자로 이전된다.

4.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배송 및 포장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운송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제 4.3 항에 명시된 정보와 함께 발송 준비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지멘스 에너지 routing order tool 를 사용해야 한다. 발주자가 특정 배송 방법이나 운송 계약 체결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운송을 주선해야 한다. 지멘스 에너지 routing order tool 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운송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3 각 배송에는 내용물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전체 주문 번호가 기재된 포장지 또는 배송 메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발송 통지(notice of dispatch)는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여즉시 제출되어야 한다.

4.4 발주자과 공급자가, 공급자가 발주자를 위해 위험물이 포함된 배송물의 운송을 주문하는 데 서로 동의하는 경우, 공급자는 운송 주문 시 발주자가 지정한 화물 운송업체에 법적으로 필요한 위험물 정보를 전송할

Siemens Energy is a trademark licensed by Siemens AG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는 사용되는 운송 수단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포장, 표시, 라벨링 등을 수행할 책임도 있다.

4.5 소유권 이전은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인도받거나 인수하는 시점에 이루어진진다.

4.6 공급자는 납품 및 서비스가 계약에 부합하고 완벽한 상태이며, 소유권 하자 또는 결함이 없고, 결함이 없는 원자재로 생산되며, 제한 없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의도된 목적에 적합함을 보증한다. 여기에는 특히 생산 국가, 목적지 및 발주자 국가의 공식 및 법적 조항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급자는 위험 이전 시점의 배송 및 서비스가 최신 기술 상태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발주자는 결함이 있는 상품을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품하고 주문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7 공급자의 모든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숙련된 인력을 통해 세심한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제공되어야 한다.

5 청구서 (Invoice) 및 결제

5.1 청구서는 납품 또는 서비스 완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청구서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모든 납품 또는 서비스는 계약에 따라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후에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5.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결제 기한은 60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14 일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발주자는 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결제 기간은 배송 또는 서비스가 완료되고 제 5.1 항에 따라 올바르게 발행된 청구서를 수령하는 즉시 시작된다.

5.3 청구서에는 발주 번호, 프로젝트 이름, 공급자 은행을 포함한 모든 품목 및 서비스의 주문 참조 및 번호와 함께 프로젝트 완료 증거 또는 납품 또는 서비스 완료 증거와 같은 충분한 증빙 서류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청구서를 지급되지 않는다.

5.4 결제는 해당 배송 또는 서비스가 계약에 따라 제공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5 발주자가 결함을 이유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불을 상계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결함이 완전히 시정된 후 시작된다.

6 수령 시 검사

6.1 발주자는 납품 수령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수량과 유형 또는 사양이 정확한지 검사하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운송 손상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2 발주자는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또는 이후 단계에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공급자에 해당 결함을 알려야 한다.

6.3 불만 사항은 제품 또는 성능 배송 후 1 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시운전, 처리 또는 첫 사용 전까지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발견 후 1 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6.4 대한민국 상법 제 69 조에 따른 즉시 심사 및 통지의 의무는 면제된다. 공급자는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결함에 대한 통지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7 하자보증

7.1 위험 이전 전 또는 이전 중 또는 제 7.8 항 또는 제 7.9 항에 규정된 보증 기간 중에 결함이 확인된 경우 공급자는 자체 비용과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결함을 수리하거나 서비스 재수행 또는 배송 교체(=치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샘플 테스트에 의한 검사 대상 배송에도 적용된다. 발주자의 재량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7.2 공급자가 발주자가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함을 시정(예: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2.1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또는

7.2.2 가격 인하 요구

7.2.3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수행하거나 서비스 재수행 또는 배송 교체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수리를 주선, 그리고

7.2.4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

하자의 치유의 적시성 판단 시점은 목적지에서 수령한 날짜로 한다.

7.3 발주자가 지연에 관해 본인의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즉각적인 시정에 대한 강한 특별한 이익이 있고, 발주자가 공급자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함을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제 7.2 항에 따른 권리를 추가 기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기한설정에 대한 강행 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7.4 위에 언급된 권리는 결함 통지일로부터 1 년이 지나면 만료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에 명시된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료되지 않는다.

7.5 발주자의 추가 또는 기타 법률상 권한은 본 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7.6 공급자가 후속 성능 또는 수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 7.8 항 및 제 7.9 항에 명시된 보증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7.7 배송에 관한 위험 이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리와 관련된 비용 및 위험(예: 반품 비용, 운송 비용, 제거 및 재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7.8 자재, 물품 및 서비스의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은 더 긴 기간을 규정하는 법적 조항이 없는 한 3 년이다.

7.9 소유권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은 더 긴 기간을 규정하는 법적 조항이 없는 한 5 년이다.

7.10 설치 또는 시운전을 포함하지 않는 배송의 경우 보증 기간은 발주자가 지정한 배송지에서의 수령과 함께 시작된다. 설치, 시운전 또는 서비스가 포함된 배송의 경우 보증 기간은 발주자가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발주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운영 중인 장소로 배송되는 경우 보증 기간은 최종 발주자가 수령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 이전 후 1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8 공급자의 확인 및 통지의무

8.1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공급자의 하청업체, 제조업체 또는 기타 제 3 자가 제공한 원자재 등의 구성품을 수령할 때 해당 구성품에 명백하거나 숨겨진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하청업체에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구성품의 경우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8.2 모든 제품은 제 3 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소유권을 확인하고, 상충할 수 있는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률상 시효가 적용된다.

9 품질 관리, 제 3 자에 대한 하도급

9.1 공급자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예: DIN EN ISO 9001 에 따름).

9.2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제공 자료 및 정보

10.1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자의 재산으로 유지되며, 발주자의 재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하고 발주자에게 비용 추가없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발주자의 주문으로만 사용이 제한된다. 공급자는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가치 감소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체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할당된 자재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10.2 자료 및 정보의 모든 처리 또는 변형은 발주자를 위해 이루어진다. 발주자는 즉시 새 제품 또는 변형된 제품의 소유자가 된다. 법률상 사유로불가능한 경우, 발주자과 공급자는 처리 또는 변형이 진행되는 동안 발주자가 항상 새 제품의 소유자가 된다는 데 동의한다. 공급자는 추가 비용 없이 발주자를 위해 새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판매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1 도구, 패턴, 샘플, 기밀성, 보험

11.1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발주자를 위해 제작한 모든 도구, 패턴, 샘플, 모델, 프로파일, 도면, 표준 사양서, 인쇄 템플릿 및 자료와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상 동의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는 무단 액세스 또는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는 추가적 법률상 권리 부가하여 해당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1.2 공급자는 납품 및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으로부터 또는 발주자에 대해 받은 지식과 결과, 문서, 참조 조건,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정보, 계약 체결 및 모든 결과를 제 3 자와 관련하여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법적 수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발주자가 개별 사안에서 그 이전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급자는 기밀 정보를 직무 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한 직원에게만 제공해야 하며, 해당 직원도 해당 정보를 기밀로 취급할 의무가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공급자는 배송 및 서비스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발주자가 제 3 자에 대한 하도급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제 3 자는 서면으로 그러한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11.3 공급자는 일반 책임 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을 자체 비용으로 부보하고 주문 이행 기간 동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12 제 3 자에 대한 양도 및 하도급

채무의 양도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납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목록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3 해지 및 취소

13.1 발주자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 외에도 (a) 공급자가 납품 또는 서비스를 지연하고 발주자의 해당 요구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연이 해당 요구 통지를 받은 후 2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b)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주자에게 계약 준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개별 사례의 상황과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공급자의 재무 상황이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악화되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정당한 의무 이행을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13.2 또한 발주자는 공급자의 자산과 관련하여 파산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3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주자는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이미 수행한 기존 시설, 배송 및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14 지멘스 에너지 공급자를 위한 행동 강령, 공급망 보안

14.1 공급자는 해당 법률 시스템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급자는 직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또는 아동 노동에 직간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뇌물 수수에 관여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지멘스 에너지 행동 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급망에 있는 자체 공급자에게도 이러한 기대치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최저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iemens Energy is a trademark licensed by Siemens AG

공급자는 해당 환경법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소위 분쟁 광물의 배치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원자재의 원산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급자는 자체 직원이 본 행동 강령의 위반 가능성을 보고할 수 있는 보호된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하며, 공급자가 본 행동 강령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험 기준으로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급자는 행동 강령의 준수 여부를 정식으로 문서화할 의무가 있다. 발주자과 그 대리인 또는 발주자가 임명하고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제 3 자는 공급자의 계약 의무, 특히 행동 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자의 사업장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의무는 아님). 이러한 검사는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공급자가 제 3 자와 체결한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실시되는 모든 검사에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급자는 자신 또는 하도급업체의 행동 강령 위반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위반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위반과 시정 조치에 대해 발주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4.2 공급자는 특히 구내 보안, 포장 및 운송, 비즈니스 파트너, 인력 및 정보와 같은 보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직 지침을 제공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무단 접근 및 조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공급자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인력만 배치해야 하며 하청 공급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4.3 발주자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하여, 발주자는 공급자가 제 14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공급자의 계약 위반이 구제 가능한 경우 발주자의 해지 권리는 발주자가 정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 내에 공급자가 해당 위반을 구제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전제로 한다.

15 제품 적합성, 물질신고, 위험물, 산업 보건 및 안전을 포함한 제품 관련 환경 규정

15.1 공급자가 기타법률상 신고하거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공급자는 위험 이전 시점에 해당 제품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5.2 국제 규정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품이 포함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와 발주자 간에 합의된 양식으로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주문 확인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제 4.4 항 및 제 4.5 항의 위험물 관련 요건은 별도로 적용된다.

15.3 공급자는 공급자가 고용한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공급자는 납품 및 서비스 수행을 위해 고용된 간접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자사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16 사이버보안

16.1 공급자는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급자 운영 (Supplier Operations)의 기밀성, 신뢰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적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범적인 업계 관행과 일치해야 하며 ISO/IEC 27001 또는 IEC 62443(해당되는 경우)과 같은 표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16.2 " Supplier Operations"이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자가 수시로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자산, 프로세스 및 시스템(정보 시스템 포함), 데이터(발주자 데이터 포함), 인력 및 사이트를 의미한다.

16.3 제품 또는 서비스에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칩셋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6.3.1 공급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취약성, 악성 코드 및 보안 사고를 예방, 식별, 평가 및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표준, 프로세스 및 방법을 구현해야 하며, 이는 ISO/IEC 27001 또는 IEC 62443(해당되는 범위 내에서)과 같은 모범 업계 관행 및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Siemens Energy is a trademark licensed by Siemens AG

16.3.2 공급자는 제품 및 서비스의 합리적인 수명 기간 동안 발주자에게 취약점을 해결하는 패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수리,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및 제공해야 한다;

16.3.3 공급자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타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자재 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타사 소프트웨어는 발주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최신 상태여야 한다;

16.3.4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언제든지 악성 코드 및 취약성에 대해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으며, 발주자를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16.3.5 공급자는 모든 정보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연락처를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업무 시간 중 이용 가능).

16.4 공급자는 Supplier Operations, 서비스 및 제품에서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모든 관련 정보 보안 사고 및 취약점이 발견되어 발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6.5 공급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하도급업체 및 공급자가 본 16 조의 조항과 유사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6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보고서(예: SSAE-16 SOC 2 유형 II)를 포함하여 본 16 조을 준수한다는 서면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17 수출 통제 및 대외 무역 데이터 규정

17.1 공급자는 모든 해당 수출 통제, 관세 및 대외 무역 규정("대외 무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발주자에게 적용되는 대외 무역 규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여기에는 EU 이사회 규정(EU) 833/2014, 692/2014, 2022/263 또는 765/2006(각 개정안 포함) 및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수출, 수입 및 재수출의 경우(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대외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주문 수령 후 2 주 이내에, 그리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목록(ECCN)에 따른 수출통제 분류 번호를 포함한 모든 해당 수출 목록 번호;
- 대외 무역 통계를 위한 현행 상품 분류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 그리고 제품 분류에 적용된 해당 관세 기준(예: EU 통합품목분류, TARIC, 미국 HTS);
- 원산지(비특혜 원산지) 및 해당 국가에서 요구되는 경우 원산지 지역, 그리고 원산지 증빙(예: 패킹리스트, 납품서, 선하증권(BOL), GAI);
- 발주자의 요청 시: 공급자의 특혜 원산지 선언(유럽 공급자의 경우) 또는 특혜 인증서(비유럽 공급자의 경우);
- 발주자의 요청 시: 제품 가공에 사용된 철 및 철강 투입물의 원산지에 대한 증거.

공급자는 본 조항 17.1 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7.2 러시아로의 재수출 금지("No-Russia-Clause")

다음 조항은 (i) Siemens Energy 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에게 어떠한 물품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ii) 해당 제공된 물품 또는 기술이 EU 규정 제 833/2014 호 제 12g 조 및 EU 규정 제 765/2006 호 제 8g 조(각 개정안 포함)에 명시된 부속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그리고 (iii) 공급이 EU 에서 제 12g 조 및 제 8g 조에 따른 파트너 국가를 제외한 제 3 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그리고 공급자는 이에 동의하여,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모든 물품 및 기술(관련 문서 포함, 제공 방식 불문)을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수출하거나 전달하거나,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지 않을 것을 금지한다.
- 공급자가 본 조항 17.2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는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 해지 시,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해지로 인해 발주자가 부담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 본 조항 17.2 에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공급자는 본 조항 17.2 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공공기관 또는 제 3 자가 제기하는 모든 청구, 소송, 절차, 벌금, 손실, 비용 및 손해로부터 발주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발주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8 유보조항

발주자는 국내 또는 국제 대외 무역 또는 세관 요건, 금수 조치 또는 기타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방해받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19 실적고객으로 언급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자는 발주자를 실적 고객으로 언급하거나 발주자를 위해 주문을 수행하는 동안 공급자가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 부칙 조항

본 구매약관의 규정이 특정 사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의 강행규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21 관할지 및 준거법

유엔 국제물품매매법(CISG)의 규정을 제외한 대한민국 실체법이 적용된다. 관련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Siemens Energy is a trademark licensed by Siemens AG